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3월 10일 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월 17일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회의 상정·의결(2023. 3. 7.)

2. 제안설명 요지

■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세무1과장 김은진)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
나.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¹⁾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1) 추진 근거

-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"특별재난지역"으로 선포('22.10.30.)
- 「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」통보(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, 2488호('22.11.2.)
- 서울시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울시 의회 통과 ('22. 11. 15.)

□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

○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나. 감면내역

○ 상기 감면대상자²)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(구세)를 면제한다.

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안 ----

- '22. 12. 자동차세 ~ '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

	세 목	부과대상	납 기
1	주 민 세 개 인 분 [*]	• 사망자 가족 (개인, 개인사업자) *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시업소분 포함	8월
	자동차세 소 유 분	•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	6월, 12월
	재 산 세	·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· 주택 등	
2	지역자원 시 설 세	• 사망자 가족 (소방분)	7월, 9월
3	취 득 세	•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부터 6개월 內

-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,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
 - ⇒ <u>주민세 개인분·사업소분(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)</u>, 자동차세 소유분, 재산세
- ② **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**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

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
-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**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**으로 취득하는 경우 ➡ 취득세

²⁾ 감면규모('22, 11, 18, 행안부 감면지원 대상기준)

^{* 2022}년 재산세(구세) 과세 : 10건 15,806,140원(서울시 전체 92건 중 <u>강서구 사망자 해당 3건, 유가족 7건</u>)

다. 기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
- 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2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-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2022. 10. 30.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 지방자치 단체가 신속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「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」이 통보되어,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제4항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2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이며,
- 또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마련 및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, 본『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』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생략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 - ※ 붙임 관련 법령 1부. 끝.

붙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.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- 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 ·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 · 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

제2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"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